

WHO 담배규제조약 5차 협약안

徐 美 卿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999년 5월부터 시작한 WHO 담배규제조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은 그 동안 전체 190여 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2차례의 실무회의와 4차례의 협상회의를 실시하였다. WHO 담배규제조약은 2003년 5월 WHO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금년 10월에 5차 협상회의를 또한 2003년 2월에 6차 협상회의를 끝으로 협약을 완성할 예정이다.

WHO 사무국은 완성된 5차 협약안을 Chair's Text라는 이름으로 2002년 7월 16회원국에 배부하였다. 5차 협약안은 1~4차 협약안에서 와는 달리 그 동안 제기된 회원국의 의견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완전한 협약안의 틀을 갖추고 있어, 2003년 5월 이전에 담배규제조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WHO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5차회의 협약안은 전체 11개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1~4차 협약안에서 미비하였던 서론, 결구, 단어의 정의, 보상과 책임 등 모든 부분을 협약안에 포함시켰다. 협약안에서는 담배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외에도 경제적, 환경적 피해 예방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조치로서 담배수요 감소 정책으로 담배가격 조정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적인 조치와 흡연구역의 조정, 담배포장의 규격 및 담배에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의 제한,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성분에 대한 규제 및 공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담배공급 감소 조치로서 담배광고의 금지, 금연 교육, 담배불법거래의 방지,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 금지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담배 생산과 관련된 환경보호 문제, 담배회사의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및 보상 문제가 정리되어 있다. 협약안은 참가국의 법적·실무적·행정적 조치의 실시를 강조하고, 참여국간의 협조와 국제기구와의 협조를 통한 담배규제조약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WHO 담배규제조약이 요구하는 담배가격 조정정책, 흡연 구역의 제한을 통한 간접흡연의 방지, 담배포기지 양식의 제한, 담배 광고의 엄격한 제한 등 많은 정책

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현재 담배규제조약 5차 협약안에서 제시하는 수준보다는 정책의 강도가 약한 편이다. 다음은 담배규제조약 5차 협약안 요약표이다. 담배규제조약 5차 협약원문은 WHO홈페이지(www.who.int/gb/fctc/E_E-inb5.htm)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표 1. WHO 담배규제조약 5차 협약안 요약표

항목	제목	주요 내용
	머리말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명백함을 인지하고 담배의 보건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에 대응하는 국제적인 대응의 필요성 부각
1부: 서론		
1장	용어정의	○조약에서 다루어지는 용어 중 담배불법거래, 간접흡연, 공공장소, 기술협력, 담배광고, 담배통제, 담배산업, 담배, 담배광고, 담배스폰서, 지역경제통합기구, 취약집단의 12개 용어에 대한 정의
2장	다른 협약안 및 법과의 관계	○협약은 참가국의 법, 기존 국제협약, 참가국간의 조약체결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부: 목적, 지침 원리 및 일반 의무 사항		
3장	목적	○담배의 사용과 담배에의 노출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감소를 통한 인류의 보호 ○담배에 의한 건강, 경제적, 환경적 결과로부터의 보호
4장	일반원칙	○협약을 달성하기 위하여 참가국이 준수하여야 하는 8가지 원칙; 참가국의 법적·실무적·행정적인 지원, 국가간의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력, 시민사회 참여의 중요성, 담배회사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책임 등
5장	일반의무	○협약을 달성하기 위하여 참가국이 준수하여야 하는 5가지 의무; 참여국의 담배통제 전략, 프로그램개발 및 실행, 참여국간의 협조, 국제기구와의 협조, 재정적인 지원 의무 등
3부: 담배 수요 감소와 관련된 대책		
6장	가격 및 조세정책	○담배가격 및 세금의 조정이 흡연을 저하에 영향을 미침을 인정 ○담배가격 및 세금의 조정을 통한 흡연율의 조정, 최종적인 완전금지를 목표로 한 면세담배에 대한 점진적인 규제
7장	비경제적조치	○담배 소비 감소에 대한 비경제적 조치의 중요성 강조 ○참가국의 법적·실무적·행정적 대책 수립 촉구 ○참여국간의 협조, 국제기구와의 협조



항목	제목	주요 내용
8장	간접흡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장소, 대중교통, 실내작업장에서의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 ○ 취약계층 우선 보호, 교육시설, 건강관리시설, 아동서비스 장소에 대한 우선 고려 ※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항, ⑤항 시행규칙 제6조(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시행규칙 제7조 (금연구연과 흡연구역의 지정 등) 제34조(과태료)
9장	담배함유물질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 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담배 제조 성분 및 방출 성분에 대한 규제
10장	담배제품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에서 방출되는 물질 공개 규제
11장	포장, 라벨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줄 수 있는 포장 및 라벨링 규제 ○ 담배 이름으로 저타르, 울트라라이트, 마일드 등의 용어 사용 금지 ○ 건강경고(그림과 글) 포함 ○ 담배에서 배출하는 독성 성분 기재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2조(흡연 경고문구의 표기대상 광고), 시행규칙 제4조(경고문구의 표기기준등), 법 제31조(벌칙)
4부: 담배 공급과 관련된 대책		

12장	교육, 통신, 훈련 및 공중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과 흡연의 노출로 야기되는 해악, 담배회사에 대한 정보 등 일반인에게 금연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실시 ○ 정책결정자, 보건사업담당자, 사회복지사 등 대상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실시 ○ 금연 관련 민간단체 참여 촉구 ※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등), 시행령 제16조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장등), 제17조(보건교육의 내용), 제18조(보건교육의 방법등)
13장	담배 광고, 홍보, 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 행사, 후원, 국경밖의 광고 등 모든 종류의 광고, 후원에 대한 단계적 철수를 통한 완전 금지 ○ 담배업계의 모든 광고, 후원에 대한 자출 공개 ○ 취약그룹에 대한 광고, 후원에 대한 엄격한 제한 ※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광고의 금지),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항, 시행령 제10조(광고내용의 범위), 제11조(광고내용의 변경 및 광고의 금지 절차 등), 제14조(제조담배에 대한 광고금지 및 제한), 시행규칙 제5조(제조담배에 대한 광고), 제31조(벌칙)
14장	담배의존, 금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의존성 관리, 금연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 보건요원, 사회복지사 등 지역사회 보건사회업무담당자의 참여 ○ 재활센터의 설립 운영

항목	제목	주요 내용
15장	담배 불법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규제를 위한 참가국의 법적 · 실무적 · 행정적 대책 ○ 각국 간의 정보 교환 ○ 담배의 생산 및 공급 통제가 가능한 면허제도의 활용 ○ 담배 포장지에 최종 판매국 표시, 판매국의 언어 사용 등 대책 강구 및 실행
16장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 판매 시 연령 확인 ○ 자동판매기, 매장 선반 등 구매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담배 판매장소 제한 ○ 담배 제품 형태의 과자류, 장난 제조, 판매 금지, 소량단위 담배판매 금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 장소), 법 제34조(과태료)
17장	담배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 생산자 보조금 점진적인 감소, 궁극적인 완전 철폐
5부: 환경 보호		
18장	환경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 재배, 가공과정에서의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 노력
6부: 책임 및 보상		
19장	책임 및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에서의 책임과 보상에 관한 법적 조치 수립 ○ 책임과 보상에 관련된 정보의 교류 ○ 전문가 자문위원회 설치
7부: 과학적 · 기술적 협력 및 정보		
20장	연구, 감시, 정보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계적으로 표준화된 담배 관련 통계의 생산 ○ 정보의 공유를 위한 DB의 구축 및 이를 위한 참가국의 협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13조(보건교육의 평가), 법 제14조(보건교육의 개발), 시행규칙 제8조(보건교육의 평가방법 및 내용)
21장	정보의 보고 및 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내용 실천 보고 및 관련 정보의 교환
22장	과학적, 법적, 기술적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 규제를 위한 법적 · 기술적 · 경제적 지원 ※ 국민건강증진법 제13조(보건교육의 평가), 제14조(보건교육의 개발), 시행규칙 제8조(보건교육의 평가방법 및 내용)
8부: 기구간 조정 및 재원		
23장	당사자간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간 회의 개최 관련 규정
24장	의장 금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의 역할 및 기능
25장	국제기구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항
26장	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조약 이행을 위한 개발도상국, 전화기의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자금 확보 메커니즘의 구축



항목	제목	주요 내용
9부: 분쟁의 조정		
27장	분쟁의 조정	○ 분쟁 조정 사항
10부: 협약의 전개		
28장	수정	○ 협약안 수정은 참가국의 2/3 이상 승인으로 가능
29장	부속조항	○ 본 협약안의 일부로 채택, 채택과정은 28장의 내용에 준함.
11부: 최종 조항		
30장	유보조항	○ 유보조항 없음.
31장	탈퇴	○ 협약 발효후 3년 이후부터 탈퇴 통지 가능, 통지후 1년 이후부터 탈퇴 효력
32장	투표권	○ 회원국별로 1표, 2항은 예외
33장	의정서	○ 협약에 대한 당사국만이 의정서의 당사국으로 인정
34장	서명	○ WHO에서 서명, 일정 기간 이후는 UN에서 서명함.
35장	비준, 승인, 가입	○ 국가단위의 비준, 허용, 승인, 가입절차에 준함. 지역경제통합 기구로부터 확인 절차
36장	발효	○ 발효에 대한 규정
37장	위탁인	○ 유엔총회의장
38장	인증문안	○ 6개의 공식어 사용